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1,741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0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다만, 도시지역·취락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중 1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

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제13조제1항제3호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3조제1항”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목상 대지·공장용지·임야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의 설치

나.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 환경보전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종말 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1.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

12.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의 제조를 위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3. 농축산업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9호 다목중 “산림법 제87조 및”을 “산림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수하거나”로 하며,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목상 대지·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가스·입자상 물질 및 악취배출시설과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의 설치

나.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0.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총면적 20만 제곱미터미만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11.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레미콘·아스콘 및 연탄등 연료의 제조를 위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2.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13. 소방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1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중 총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부지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다.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중 일반인과 격리하여 치료 또는 요양을 하여야 하는 정신병원·나병원·결핵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병원의 설치

라.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운동·교육연구시설, 근로자의 근로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청소년회관에 한한다) 또는 국민의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중 각각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6.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의 설치

17. 청소년야영장·자연학습원 또는 심신수련장 등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

제17조제1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

5.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

용하는 시설의 설치

6.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치

제21조제2항제5호중 “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과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부분적으로”를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 등의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한다.

제30조제2호중 “경매법”을 “경매법 또는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9.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 지구안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게 동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용도를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의2 제1항중 “이를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에 관한 권한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각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또는 건축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가. 교통운수시설 : 철도·도로·궤도·삭도·교량

나. 공공시설 : 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

다. 기타의 시설 : 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

[별표 1] 중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국제공항관리공단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改正理由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중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되나, 그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중 그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도 그 변경되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취락지역·공업지

역·관광휴양지역 또는 개발촉진지역인 때에는 그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5조제5호).

나. 경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농축산업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등 3개행위를, 산림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총면적 20만 제곱미터미만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등 9개행위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자연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지하광물의 채굴 등 3개행위를 각각 추가함(영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규제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거래계약신고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허가제 및 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 4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새로이 추가함(영 제30조).

라.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로서 그 부지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하의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시설 또는 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권한까지 확대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또한 철도 등 교통운수시설, 상수도 등 공공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용지의 입지에 대한 협의 및 승인권한과 취약지역개발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추가하여 위임함(영 제58조).

(법제처 제공)